## 빠쁜₩┕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5회 (12/24)

- 1.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
- 2. 시장·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 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 )
- 3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2회에 한하 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 )
- 4.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)
- 5.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( )
- 6.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·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·군수·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 ( )
- 7.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 며,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 ( )
- 8. 국토교통부장관과 시.도지사는 건축허가권한이 있다. ( )
- 9.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 ( )
- 10. 주택법령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연립주택은 포함되지 않 는다. ( )

## 께쌛**께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**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5회 (12/24)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0)
- 2. (0)
- 3. (X)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.
- 4. (0)
- 5. (O)
- 6. (X)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이다.
- 7. (0)
- 8. (X)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승인권자에만 해당한다.
- 9. (O)
- 10. (X) 연립주택도 주택법령상의 주택에는 포함이 된다.